

왜 “모범정관”인가?

「모범정관갯기운동」의 등장

교회는 천국의 표상이라는 영적 지위와 함께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구체적 조직으로 존재한다. 지상에서의 교회는 무정부 사회가 아닌 이상 해당 국가의 법적 관리를 받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교회란 “비법인 사단”으로서 정관을 갖게 되어 있다. “교회정관”은 모든 조직 교회가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서 해당 교회의 제도적 요건을 적시하고 있어야 한다.

현실에 있어서 한국 교회 교인들 다수는 “교회정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다. 대개의 경우 교회를 설립할 시점에 누군가가 대충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일종의 “격양가(擊壤歌)”적 꿈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이러한 정관에 대한 무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런 정관이 교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교회의 갈등이 일반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다. 일반 사회의 법정은 성문화되어 있는 “교회정관”을 갈등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 「모범정관갯기운동」이 나타난 것은 2002년 「교회개혁실천연대(약칭 개혁연대)」라는 단체가 출범하면서이다. 개혁연대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건강교회운동본부가 교회개혁에 전념하기 위해 독립한 뒤 구성된 단체이다. 이 단체의 참여자들은 교회개혁을 위해 긴급구난, 제도개혁, 의식개혁의 세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모범정관갯기운동은 이 중에서 제도개혁분과가 중점사업으로 채택한 운동이었다.

“모범정관”이란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제도적 틀이다.



백종국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서울대학원 정치학과를 거쳐 미국의 UCLA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정치경제학을 전공하여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한국자본주의의 선택』, 『멕시코혁명사』 등의 저서 외에 수십 편의 논문이 있다. 21세기정치학회장, 희망정치시민연합 공동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공동대표 등 학회와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김선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모범정관갯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2003)의 부록을 살펴보면 당시에 수집한 여러 교회의 정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매우 혼란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것도 있다.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부적절한 정관들이 태반이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모범정관은 먼저 올바른 신앙고백을 확인하고 ‘양심의 자유’, ‘교회의 주권’, ‘복음적 분업’이라는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제도적 3대 원칙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의 민주화, 목사·장로의 임기제 도입, 재정의 투명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였다. 그 후 이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각종 자료들 예컨대,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정관』, 『재정보고의 정석』,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등이 발간되었다.

최근 교회정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범정관의 참조는 상식이 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제도적 틀을 돌이켜 보고 가급적 복음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관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교회에서 정관제정위원회 혹은 정관개정위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던 교회들이나 갈등 과정에서 분립하게 된 교회들은 더욱 절실하게 모범적인 정관의 틀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바람직한 제도적 틀, 즉 모범정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제도적 틀이 없는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극단적 갈망,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신뢰, 혹은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왜곡 등이 건전한 정관의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회법연구소 등의 명칭을 걸고 복음적 원칙과 상반되는 제도를 추천하는 사람들조차 생겨나고 있다.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 모범정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주석신학 대 조직신학(?)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가 성경만 따르면 되지 교회정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교회는 “정관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매우 이상적이게 들리지만 건전한 것이 아니다.

우선 교회법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교회에 성경 외의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장은 주석신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 사이의 오랜 논쟁이었다. 답은 “그렇다”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제정된 신앙고백이나 신학이론, 법이나 규칙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준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전자는 교회 안에서 성경 이외의 문서들이 성경을 대체할 위험성을, 후자는 자의적인 성경해석을 통한 불건전한 신앙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 지상 교회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획일의 위험”과 “분열의 위험”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신앙고백이나 법규범은 성경 그 자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제정한 주체의 권위 때문에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물이 과연 성경적 원리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각자가 지닌 신앙양심이 그 판단자가 된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0장이 요약하는 “양심의 자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회정치 용어의 왜곡에 대하여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 교회만큼 용어의 혼란과 특이성을 보이는 집단도 드물다. 한국 교회는 “중경총회장”, “서리집사”, “사모” 등 국어사전에서 그 용법을 찾아보기 힘든 용어를 양산해 왔다. 더 위험한 것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신본주의”, “헌법”, “일천번제”, “주의 종” 등의 용어들을 본래의 뜻과 왜곡되게 해석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계토화하는 것이며, 무지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왜곡일 수도 있다.

왜곡의 해악은 적지 않다. 예컨대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一千燔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를 일천 번(一千番) 헌금하면 마침내 소원이 이뤄진다는 식의 샤머니즘적 신앙관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대한 오해는 더욱 뿌리가 깊다. 신본주의(神本主義)의 반대는 인본주의(人本主義)이고, 신정(神政)의 반대는 세속정(世俗政)이며,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반대는 독재주의(獨裁主義)라는 게 사회적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내에서 민주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광호 목사의 오류도 이와 같다. 그는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구성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지분적 권리를 가진다”로 이해하고 교회는 민주적 단체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혼란은 “교회법은 질서 문서이지 권력적 규정이 아니다”라고 한 ‘뉴스앤조이’의 기고문 표제어에 잘 나타나 있다. “민주적”, “지분적 권리”, “질서”, “권력적 규정” 등 많은 개념들이 부정확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뒤틀린 개념들에 대한 토론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개혁신학회의 정치 체제는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헌법주석』(1983)에서 “장로회 정치의 정신은 한마디로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는 교리이다. 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개혁신학의 신학자들과 교회헌법 주석가들이 지적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물론 동시에 장로회 정치는 지극히 신본주의적이다.

“헌법”과 “주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하다.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대체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입헌주의가 나타난 19세기 이후에 일반화된 개념이다. 주권(主權 sovereignty)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독

립·절대의 권력을 의미하며 몽테스큐가 이 개념의 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둘은 상호연관이 있는 개념이며 대체로 헌법은 주권의 표현으로 본다.

이러한 정치적 용어들이 교회정치에 사용될 때는 비유적(analogy)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과 상충하느냐는 문제이다. 전자가 신정(神政)이 아니라 세속정(世俗政)을 받아들인다면 의미상으로 앞의 ‘헌법’은 뒤의 ‘헌법’에 종속되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그 반대라면 한국은 두 개의 헌법이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전자의 ‘헌법’이라는 표현은 동 교단의 의사를 신앙적으로 결집한 최고 문서라는 정도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실제로 예장합동 울산노회 소속의 남울산교회 문제에 대해 한국의 법원이 최종 판결한 바를 예장합동교단이 거스를 수 없었다. 한국의 법원은 그 교회를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으로 간주할 뿐 그 교회에 대한 예장합동의 “주권”을 인정할 의사도 없었다.

정관(定款)은 이에 비하면 훨씬 더 명료하고 유익한 개념이다. 정관은 회사나 공익 법인 등의 목적·조직·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규정으로 한국의 행정규칙에 따르면 개교회법이 국가기관에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으로 등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교단들은 “헌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정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막상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 주체들이 적당히 꾸며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돕기 위해 예장통합은 총 8장 20조에 이르는 교회정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점은 「교회정관」을 가질 것이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교회정관」을 가질 것이냐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며, 교회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소위 교회법 전문가들도 자주 빠지곤 하는 오류이다. 이쯤에서 정관의 법적 지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

지 않을 수 없다. 개교회의 정관은 민법상의 요구사항이며 해당 법안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갖춰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법원은 교단헌법을 준용해야 할 특수사항(예컨대 목사의 자격 등) 이외의 사법적 판단을 각 교회의 정관에 준해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관이 부실하면 사법부의 판단도 갈피를 잡기 어려워진다.

모범정관의 의의

교회의 정관을 하위법으로 교단의 헌법을 상위법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개혁신교회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박윤선 박사는 그의 『헌법주석』(1983)에서 벌코프(Berkhof)를 인용하면서 “개혁신교회는 지교회 당회의 권한보다 더 높은 종류의 교회적 권세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혁신교회에서 당회, 노회, 총회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교리의 보존과 권징의 조화를 위해 협력하는 연합체들이다. 문제는 “헌법”이란 비유적 용어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한국 교회 내에 성경의 정신과는 다른 왜곡된 권위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교회가 제각기 다른 정관을 채택하면 교리의 보존과 권징의 조화 혹은 교회의 일치에 해로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 정관의 내용에서 각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고백과 권징의 절차를 인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스스로가 비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약들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개교회가 정관을 가짐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개교회의 위세를 떨치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교단의 “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목격되는 대형교회들의 “개교회주의”가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범정관” 혹은 “민주적 정관” 갖기 운동은 매우 유용하다. 마치 물을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가 되듯이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보다 좋은 제도를 채택할수록 더욱 주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해진다. 어떤 제도가 주의 뜻에 더욱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깊은 연구, 창의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정관 모델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 모범정관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직분자들의 임기제이다. 목사, 장로 혹은 집사일지라도 각각의 임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을 고려할 때 임기의 존재는 극히 유익하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직분”, “직위”, “시무”, “위임”, “항존직”과 같은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의 수립이다. 이미 지적한 바처럼 이 “민주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는 속히 불식시키는 게 좋다. 더구나 현재의 소위 “헌법”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질곡과 부덕함을 생각하면 어느 특정한 인간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각급 회의체의 의사결정 정족수부터 확인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일치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 피차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민주적 구조를 마련할 일이다.

셋째는 투명한 재정구조의 확립이다. 각 교회의 재정 사항을 공개하고, 재정 항목을 합리화하며, 교회 재산의 관리 절차를 잘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헌금이 주님의 일이 아닌 곳에 쓰이거나 낭비되

는 것을 방지하고 각 교회가 추구하는 개별적 비전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범정관의 채택은 한국 교회의 일치와 긴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의 일치를 교단 간의 협상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갈수록 교회 일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 교회 일치의 큰 사명을 가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주요 교단들의 노회한 정치가들로 조직된 이 단체의 지도부는 한국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신앙고백과는 매우 동떨어진 방식으로 세속 정치에의 참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하는 성명서와 정책 그리고 활동이 과연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다수의 뜻인지 아니면 고령의 극보수적인 소수 교단 정치가들의 뜻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속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조직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각 교회의 비전을 반영하면서 신앙고백과 치리체제가 동일한 정관을 채택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일치 가능성을 높여준다. 좀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 “분산과 집중” 혹은 “특성화와 통합”을 조화시킬 수 있다. 역사와 위치, 크기가 각각 다른 개체 교회들이 반드시 같은 규칙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팔과 다리가 서로 다르지만 몸의 한 지체이듯이 각 개체교회는 한국 교회의 각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모범정관의 채택 운동은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의 단일 헌법 채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이 글은 언론매체에 기고했던 모범정관 관련 글들을 종합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므로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